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02 / 2005년 2월 28일

중국의 WTO 협정 이행 현황과 대외경제정책에의 영향

량옌펀 (梁艳芬)

상무부 국제경제무역협력연구원 WTO 연구중심 주임

I. 발표요지

1. 상품교역 부문의 이행 현황¹⁾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 중국은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평균관세율을 10%까지 인하할 것임.

- 특히,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9.3%까지 인하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006년 7월 1일까지 각각 25%와 10%로 인하할 계획임.

○ 그러나 일부 화공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2008년에 마무리될 예정.

○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참여하여 2005년까지 IT 전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를 폐지

○ 농산물 평균관세율도 당초 약속했던 15%를 초과하여 2003년에 이미 15.8%를 기록(전년대비 10.2% 인하)하였으며 2004년에는 10%까지 인하할 계획임.

○ 따라서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폭은 WTO 가입에 따른 이행약속보다 빠르

1)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정식 가입함.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는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폐지,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됨.

계 진행

- 한편 관세율 인하 조정 품목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2년 5,000여 품목, 2003년 3,000여 품목에 달함.

□ 비관세장벽 철폐

- 중국은 WTO 가입후 5년 내에 3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 및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약속함.
 - 다만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식량, 면화, 식물류, 설탕, 담배 등의 수입과 차(茶), 쌀, 옥수수, 대두, 중석(鎊)제품, 석탄, 원유, 정제유, 폴솜 등의 수출에 대한 국영 무역권한은 유지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 수출 및 수입쿼터허가증 관리 품목이 각각 52개와 8개로 감소
 - 또한 오토바이와 관련 부품, 자동차와 관련 부품, 카메라, 손목시계 등 16개 품목의 수입쿼터, 허가증 및 특정입찰관리를 폐지함.

□ 대외무역경영권 개방

- WTO 가입후 3년 내에 중국내 모든 기업에게 대외무역권을 개방하기로 약속함.
 - 이에 중국정부는 2004년 개정된 '신무역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개인에게 국내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외무역권한을 부여함(단, 국영무역을 실행하고 있는 제품은 제외).
 - 다만 새로운 무역법은 개인이 대외무역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공상등기와 기타 영업수속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海關관리

- 관세는 WTO 규범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과세기준은 '최저가격'과 '참고가격'을 채택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 또한 수출국이 시행하는 선적전 검사제도에 대해 비차별적이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장벽을 철폐함.

□ 상품검사, 원산지, 수입허가절차 및 기술표준

- 위생 및 검역보고서는 5일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부분 국제기준을 채택함.
- o 현재 개도국이 국제표준을 사용하는 비중은 40% 미만임.
- 중국은 다수의 국가를 거쳐 제조가공된 수입품에 대하여 관련제품의 가치총액에서 3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거나 질적 변화를 가져온 제조지역을 원산지로 규정
- o 이와 관련, 중국은 국제기준 적용을 향후 10년 내에 50%까지 확대할 계획

2) WTO 가입후 상품교역 발전 현황

□ 상품무역액이 크게 상승하여 전세계 상품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

- 상품무역액은 WTO 가입이전 5,097.7억 달러에서 2002년 6,207.7억 달러 (21.8% 증가), 2003년 8,512.1억 달러(37.1% 증가)로 증가
- o 2004년에는 1조 달러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전망치)
- 이에 전세계 무역순위도 WTO 가입전 5위에서 4위로 상승
- o 수출비중은 ('01) 4.3% → ('02) 5.1% → ('03) 5.9% → ('04) 6% 이상으로 증가
- o 수입비중은 ('01) 3.8% → ('02) 4.4% → ('03) 5%에 근접

□ 상품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WTO 가입 초기에 상승하였던 무역흑자규모도 다소 하락

- 상품수입증가율: ('01) 8.2% → ('02) 29.3% → ('03) 39.9%
- o 상품수출증가율: ('01) 6.5% → ('02) 20.9% → ('03) 34.6%
- 무역흑자 규모의 변화: ('01) 225.4억 달러 → ('02) 303.7억 달러 → ('03) 255.3억 달러

□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완제품은 수입보다 수출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

- 완제품의 수출비중 변화: ('01) 90.0% → ('02) 91.2% → ('03) 92.0%
- o 그 중, 1차산품의 무역 비중은 수출보다 수입이 보다 높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

- 완제품의 수입비중 변화: ('01) 71.2% → ('02) 83.3% → ('03) 85.0%
- 기계와 전력설비제품의 비중은 ('01) 44.6% → ('02) 48.2% → ('03) 51.9%로 증가
- 1차산품의 수입 비중은 ('01) 18.8% → ('02) 16.7% → ('03) 13.1%로 하락세

- 그러나 원유, 철강재, 정제유, 철광석 및 정광의 수입은 급속히 증가 추세
- 원유 수입량은 ('01) 6,026만 톤 → ('02) 6,941만 톤 → ('03) 9,112만 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중국의 원유수입량은 인도와 함께 크게 증가 예상
- 철강재 수입량: ('01) 1,722만 톤 → ('02) 2,449만 톤 → ('03) 3,717만 톤
- 정제유 수입량: ('01) 2,145만 톤 → ('02) 2,034만 톤 → ('03) 2,824만 톤
- 철광석·정광 수입량: ('01) 9,231만 톤 → ('02) 11,150만 톤 → ('03) 14,813만 톤

□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나, 집체기업과 사영기업의 비중도 증가 추세

- 외자기업의 무역비중: ('01) 50.1% → ('02) 52.2% → ('03) 54.8%로 상승 추세
- 수출비중: ('01) 51.6% → ('02) 54.3% → ('03) 56.2%

- 민영기업의 수출비중: ('01) 7.3% → ('02) 10.1% → ('03) 13.7%
- 수입비중: ('01) 5.8% → ('02) 6.9% → ('03) 9.3%

- 국유기업의 무역비중은 수출·입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세
- 수출비중: ('01) 42.5% → ('02) 37.7% → ('03) 31.5%
- 수입비중: ('01) 42.5% → ('02) 38.8% → ('03) 34.5%

3) WTO 가입후 상품무역 발전의 특징

□ WTO 가입후 무역의 증가가 더욱 촉진되어 경제발전을 견인

- 2002년 8.0%이던 GDP 성장률이 2003년 9.1%로 증가하는데 대외무역이 기여

○ GDP 대비 상품수출비중: ('01) 22.9% → ('02) 27.1% → ('03) 30.9%

○ GDP 대비 상품수입비중도 관세율 인하에 따라 증가

- 관세 및 수입환절세(수입부과세)도 ('02) 2,590.6억 위엔 → ('03) 3,712억 위엔으로 증가

○ 외환보유고도 ('01) 2,121.6억 달러 → ('02) 2,864.1억 달러 → ('03) 4,032.5억 달러로 증가

□ 상품수출 증가와 원·부자재 수입 급증 등을 통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음.

- 수입의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균형에도 도움

□ 절강성 윈저우(溫州), 연해도시 등 상품무역에서 집체경제와 민영경제의 비중이 크거나 민영경제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성(省)은 앞으로 무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이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더욱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

- 또한 중국이 WTO 가입시에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함을 엿볼 수 있음.

□ 유럽, 일본 등 전통적인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은 증가 추세에 있어 중국의 대외무역이 다원화하고 있음.

- 가공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난과 원·부자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등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일부 산업에의 영향이 있었을 뿐 전반적인 경제에의 영향은 크지 않음.

2. 서비스무역 부문의 이행 현황

1) 이행 약속²⁾

2) WTO 협정에 의거, 서비스무역은 150여 품목과 관련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통신서비스와 택배서비스 부문의 경우, 외자가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
 - WTO 가입 협상시, 미국은 외자의 51% 지분 확보를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49%로 결정
 - WTO 가입후 1년내에 외자의 다수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4년내에 외자의 독자기업설립을 허용
 - 또한,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베이징(北京)에서 외국인의 합자증치(增值)전신기업 설립과 무제한적인 서비스제공을 허용함.
 - 다만 합자기업의 외국자본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WTO 가입후 2년내에 지역제한을 폐지하나 외자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WTO 가입후 2년내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며, 가입후 5년 후부터는 일반인에 대한 영업을 허용함.
- 가입 후 2년내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의 형식 제한을 폐지함.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50% 지분을 소유하는 합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며, 합자파트너의 자주적인 선택이 가능
 -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는 지역제한 없이 일괄등록 형태의 대형상업보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외국계 비생명보험회사는 WTO 가입과 함께 외국기업들에 대한 보험서비스와 외자투자기업에 대한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서비스 가능
 - 또한 외국보험회사의 외국인 및 중국인에 대한 개인보험서비스 허용
 - WTO 가입후 3년내에 외국계 보험회사의 내외국인에 대한 의료·양로·연금·단체보험 영업을 허용
- 중국은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수입권한과 소매영업권을 허용

- 무역권한 개방은 WTO 가입후 3년 내에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
- 소매영업권은 도매업, 운수업, 수리업 중에서 1개를 즉시 실시하고, WTO 가입후 3년 내에 소매영업 제한을 대부분 폐지함.
- 그 밖에 임대, 택배, 물류운송, 화물선(货船), 광고, 기술검사분석, 포장 등의 서비스는 WTO 가입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2) 이행 현황

□ 중국은 현재 당초 이행약속에 따라 기본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은행 외에 자동차구매 할부금융사의 설립,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개방 지역 확대, 소매업 개방, 법률의 투명성 제고 등

□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 2003년 467억 달러를 수출하고 553억 달러를 수입하여 서비스무역은 8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004년 상반기 동안에 서비스무역의 총액은 587억 달러를 기록, 5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그 중, 수입과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7%와 37% 증가하여 323억 달러와 264억 달러를 기록함.

□ 은행, 보험, 증권, 법률, 소매유통, 교통운수,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40여건의 법률과 제도를 공포

-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부문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음.

□ WTO 가입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대폭적으로 성장

- 2003년 해당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건수는 10,159건인데,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 건수의 24.7%를 차지
- 금액(계약기준) 면에서도 285.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50.2% 증가

3) 업종별 이행 현황

- 은행 부문의 경우, 외자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지역적 제한과 고객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다른 분야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추진
 - WTO 가입 당시,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지역은 상해와 심천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천진, 대련, 광주, 주해, 청도, 무한 등 13개 도시로 확대됨.
 - 2004년 7월 15일까지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외자은행의 50%에 해당
 - 한편, 북경에서 영업을 시작한 34개 중국은행과 외자은행에 대한 중·외은행간 경쟁력 비교조사에서 1~12위를 모두 외자은행이 차지함.
 - 초상(招商)은행과 상업(商業)은행은 20위 밖에 머무름.
- 보험 부문은 대외개방업무의 중요 부분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WTO 가입시 중국은 보험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선진국 및 기타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한 바 있음.
 -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2004년 연례회의에서 현재까지 39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70여개의 영업소를 설립하였고 124개 외국기관이 187개의 대표처를 설립했다고 발표함.
 - 중국의 보험업은 1980년부터 연평균 30%이상 성장함.
 - 2004년 중국보험업의 총자산은 1조 위엔을 돌파하였는데, 그 중 운용가능한 자금이 9,000억 원을 초과했고 시장주체도 77개에 달함.
- 유통업 부문의 경우, 2004년 6월까지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액(도착기준)은 39억 달러에 이르며 268개의 외국인 유통업체와 4,502개의 지사가 설립됨.

- 특히 외국계 유통회사가 국내소매유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까르푸 등의 투자가 두드러짐.
- 중국은 WTO 가입시 이행약속에 따라 가입 3년후부터 직접판매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2004년 12월 11일까지임.
 - o 중국정부는 2004년 12월 1일을 전후하여 ‘직접판매 기업관리방법’, ‘피라미드 사기반대조항’, ‘세일즈맨 관리방법’ 등 직접판매법 체계를 수정하여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 계획
 - o 우이(吳儀) 국무원부총리는 2004년 10월 10일 개최된 국제투자세미나 오찬에서 중국정부는 현재 직접판매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외자 독자기업에 대한 출판물 시장개방 중, 소매유통업은 오는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도매유통업에 대한 투자제한은 2004년 말까지 전면 개방해야 함.
 - 따라서, 외자기업은 중국내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의 소매 및 도매부문에서의 합자, 합작 또는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에 대한 개방도 이후에 진행될 것임.

3. 지적재산권 보호

- 중국은 WTO 가입 전에 다수의 지적재산권관련 국제협정에 참여하였고 WTO 보고 서에서도 재차 확인함.
- WTO 가입 후 3년동안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첫째,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지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과 입장에 대한 거듭된 강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중국은 현재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지적재산권보호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
 - o 이미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상표법실시세칙’, ‘저작권법실시세칙’ 등 일련의 관련 법률을 발표함.

- 동시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정에도 참여
- 셋째, 우이(吳儀) 부총리를 국가지식재산권사업팀의 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권보호 집행총괄조정메커니즘(執法統籌協調機製)을 구축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함.

□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 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음.

- 2003년 전국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총 3만 7천건에 이르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사안을 조사처리함.
- 그 중 몰수·청산을 결정한 상표법 위반사례는 8,475.5만 건에 달함.
- 각급 판권행정관리기관은 2만 3천건의 위반사례를 접수,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임.
- 그 중 2만 2천건에 대해 판결함으로써, 97.5%를 이미 해결함.
- 해관은 756건의 지재권 침해사안을 조사,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금액이 6,797만 위엔에 달함.

□ 이상과 같이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장에도 변함이 없어 향후 더욱 큰 결과가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침권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 WTO TRIPS협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있는데, 앞으로 처벌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임.

4. 결론

□ 중국은 당초 기본적인 이행사항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5년에 완료하기로 함.

- 일부 이행조건은 비교적 긴 시간을 거쳐 완성해야 하는바, 예를 들어 특별세이프가드(12년 기한), 반덤핑 비시장경제대우(15년 기한), 과도기 무역정책심사제도(8년

기한), 섬유류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2008년까지) 등임.

□ WTO 가입시 약속의 이행에 따라 국외산업은 향후 몇 년간 뚜렷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WTO 가입후 1~2년동안 평균관세는 인하되지만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보다 크지 않음.

○ 관세쿼터관리조치의 실시도 정체가 존재할 것이며, 수입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일부 제품도 계획기간 내에 수입쿼터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두 과도기 동안의 일시적인 현상임.

- 중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주로 WTO 가입후 3~5년 동안에 실시될 것임.

○ 동 시기에 이르러 관세쿼터관리조치의 규범화도 완성될 것임.

○ 국내외 경제간의 융합도 더욱 강화되어 국제경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중국은 무역대국의 지위를 이미 확보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임.

- 2003년 '세계경쟁력보고'에 따르면, 44위를 차지한 중국은 인도보다도 뒤떨어져 있어 중국의 전반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자체적인 브랜드와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비교적 낮음.

- 또한 여러 국가들이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기술에 의한 무역장벽과 지식재산권보호 등으로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제품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임.

○ 특히 화공, 기계, 전력설비, 농산물, 섬유류, 건축자재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II. 토론 요지

問 : 중국의 WTO 가입의 전개과정, 성과, 주요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한다면...?

답 :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임. 중국은 다원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WTO 가입은 15년의 긴 여정 끝에 이루어진 것임. 당초 중국은 1987년 GATT/WTO 원회원국 지위로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1989년 천안 문 사태로 인해 가입현상이 중단된 바 있음. 그 후, 세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과 WTO 가입조건을 변화시켰음. 그 중에는 은행·금융업의 개방도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당시의 중국은 이를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입과정은 중단되었음. 1995년의 가입협상과정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비롯하여 보다 강도 높은 가입조건이 포함됨. 그러나, 주룽지 총리 등 지도층의 큰 결심이 있었기에 장기간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마침내 WTO에 가입할 수 있었음.

중국의 일부 업종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여타 국가들이 對중국 시장진입을 희망함. 이것이 양자간 협상의 결과로 이어짐. 만일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면, 중국의 법률이 이렇게 단기간에 구축되지 못했을 것임. WTO 가입은 농업, 자동차, 서비스업, 유통업, 전통산업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이들 업종은 대부분 합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WTO 가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으나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問 : WTO 가입은 세계질서에 편입하는 것이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 전에 국내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함. 특히 세제·세법, 반독점법, 환경보호법, 정보보호법, 노동법 등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꼽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중국내 진행상황과 검토는 어느 정도인가?

답 : 내국민대우는 WTO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함. 사실 중국은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초국민적 우대조치를 실시해온 반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내국민대우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현재 중국은 외자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차별적 대우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조세 차별은 그다지 크지 않음. 얼마 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조세조치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전체 제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심각한 문제도 아님. 기업경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임. 둘째, 반독점법은 멀지 않은 장래에 공포될 것임. 셋째, 환경보호법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사항이 없음. 넷째, 정보보호법은 국제법에 없으나, 상법법에 기재되어

있을 것임. 또한, 기업 내부 규칙과 제도상에 유사 규정이 있을 것임. 다섯째, 노동 법은 노동부와 인사부가 함께 제정하고 있음.

問 : 앞에서 WTO 가입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람. 첫째, WTO 가입에 대한 정부 또는 산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의 WTO 가입시 우려한 것 중 하나인데, 가입 초기의 원활하고 빠른 법률·제도적 이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임. 특히, 중앙정부의 이행 의지는 강력한데 반해 지방정부의 실제운영에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TPR)는 몇 년마다 개최되는가?

답 : WTO 가입시 약속의 이행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각 산업간에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업계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일단 약속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도 가능한 중앙정부의 견해에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효과를 얻었음.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관세와 서비스분야는 WTO 가입시에 약속했던 이행 일정표보다도 앞서고 있음. 이행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이행될 것이라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모순은 WTO 가입시 약속의 이행과정뿐만 아니라 세수부담의 차이, 취업기회의 차이, 중앙재정으로부터의 혜택상의 차이 등에서도 나타남. 또한, 성(省)과 성간의 모순도 다양하게 존재함.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맞서지 못할 것임.

중국은 WTO 가입후 8년까지는 매년 무역정책검토회의를 실시하고, 8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2년에 한번 실시할 것임. (***)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